

## 1. 개정이유

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낚시어선업 신고 시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는 민원인이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서 제외하고,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낚시어선업 신고 시 제출서류 예외 규정 마련(안 제16조제1항 개정, 별지 제11호서식 개정)

-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정보(선박출항·입항신고 사실확인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)는 신고인이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서 제외하고 관련 서식 정비

나. 행정정보 공동 이용 규정 마련(안 제28조제2항 신설)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출항·입항사실확인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##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6호 중 “있는 서류”를 “있는 서류(선박출항·입항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)”로 한다.

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출항·입항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(신고인이 같은 항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해야 한다. 다만,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낚시어선업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|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접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급일                    | 처리기간        | 2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
| 신고인 및<br>선원 중<br>해기사 면허<br>소지자 |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| 면허의 직종 및 등급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어선 명세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어선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어선의 명칭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톤수<br>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선적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대승선 승객 수<br>최대승선 선원 수 | 명<br>명      |    |
| 주 영업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영업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주간(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)<br>[ ] 야간(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)<br>[ ] 기타( 시 ~ 시)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25조제1항 전단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성명(법인명):

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:  
(법인등록번호)

주 소:

(전화번호: )

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신고인 제출서류    | 1. 어선검사증서 사본<br>2.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<br>3.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」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<br>4.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<br>5. 「선박직원법」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<br>6. 선장의 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선박출항 · 입항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<br>7.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(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) | 수수료<br>조례에 따<br>름 |
|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|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<br>2. 선박출항 · 입항사실확인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(신고인이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」 제16조제1항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
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선박출항·입항사실확인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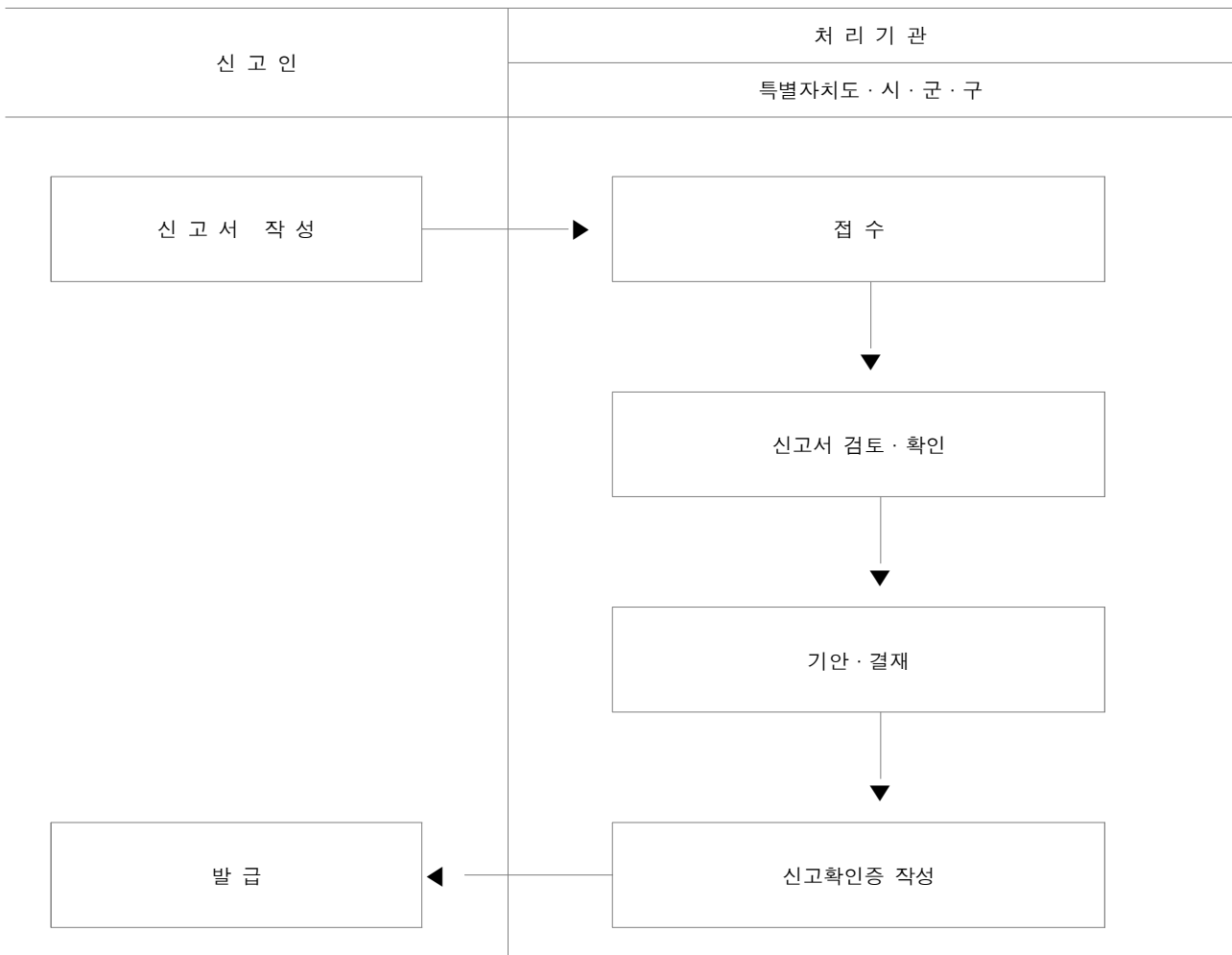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## 작성방법

-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·포구명을 적습니다.
-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(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)를 적습니다.
-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시·군·구의 항·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·포구명을 적습니다.

## 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6조(낙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)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낙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낙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낙시어선의 선적항(船籍港)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 제16조(낙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5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선장의 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.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있는 서류<br>(선박출항·입항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) |
| 7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·③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·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28조(행정정보의 공동이용)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8조(행정정보의 공동이용) ①<br>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신 설>

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출항·입항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(신고인이 같은 항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해야 한다. 다만,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.